

보다 안전한 미래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3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 국장

문서번호 시험 2020 - 262호

시행일자 2020. 7. 1.

수 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

참 조 종합진단처장

선			지	
결			시	
접	일자		결	
	시간			
수	번호		재	
처	리	과	공	
담	당	자	람	

제 목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준수 및 적정대가 반영 요청

1. 국가 기간시설물의 건설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공사가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제100조 제1항(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)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047호, 2020.01.23.)」의 제21조(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)에 따른 [별표1]에 따라야 하나,

2020년 4월 24일 기 공고 시행한 ‘회야댐-울산공업용수도간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’를 발주 하면서 점검비용 19,870,000원(부가세별도)으로 흙막이 지보공(2회), 거푸집, 동바리(2회) 등을 추가하여 정기안전점검 10회, 초기점검 2회를 실시토록 하고,

2020년 6월 24일 기 공고 시행한 ‘금산정수장 운영효율화사업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’를 하면서 점검비용 3,932,479원(부가세포함)으로 위 [별표1]에도 없는 향타·향받기 2회, 흙막이 보호공 2회 등을 추가하여 정기안전점검 7회, 초기점검 1회를 실시토록 하는 등 적정대가의 반영 없이 직

접비용 실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가로 부당한 발주를 하였는바 부실한 안전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 횟수를 준수하고 적정대가를 반영하여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끝).

[참 고 :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,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대상과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]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